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50888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웅(소송구조)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(담당변호사 이상희, 소송구조)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도, 유명인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원고에게, 피고 B은 7,693,410원,1)

피고 C는 5,733,466원, 피고 D은 5,733,466원, 피고 E는 3,773,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4. 1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○ 원고는 사단법인 G(변경 전 명칭: 사단법인 H, 이하 ‘G’)를 상대로 두 차례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① 2018. 5. 24. ‘G 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2012. 4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44344호, 이하 ‘제1판결’)을 받았고, ② 2018. 10. 11. ‘G 는 원고에게 85,000,000원 및 2013. 9. 15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(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1480호, 이하 ‘제2판결’)을 받았다. 제1, 2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.

○ 피고들은 G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. 11. 27. ‘G 는 피고 B에게 15,000,000원, 피고 C, D에게 각 12,000,000원, 피고 E에게 9,000,000원 및 2015. 6. 15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무변론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4400호)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○ 한편 원고는 2014. 4. 1. 제2판결의 임금채권액 85,000,000원(2012. 4.부터 2013. 8.까지의 임금채권)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2030호)을 받았다. 피고들은 2016. 1. 25. 위 무변론 승소판결에 터 잡아 G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294호)을 받았다.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. 2. 3.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G에 대한 진료비 채무액 111,007,180원을 집행공탁한 다음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고, 이에 따라 배당절차(서울중앙지방법원 F, 이하 ‘이 사건 배당절차’)가 개시되었다.

○ 배당법원은 2018. 6. 15. 원고에게 75,269,898원,2) 피고 B에게 10,957,488원, 피고 C, D에게 각 8,165,992원, 피고 E에게 5,374,4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.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.

○ 배당이의의 소 항소심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3496호)은 2019. 12. 20. 피고들이 G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‘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,957,488원을 7,693,418원으로, 피고 C, D에 대한 배당액 각 8,165,992원을 각 5,733,466원으로,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5,374,493원을 3,773,513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,269,898원을 85,000,000원으로 경정한다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○ 위 배당이의의 소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졌고,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85,000,000원을 배당받았다. 한편 원고는 제1판결의 원금 15,000,000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 외에서 별도로 변제받았다.

○ 원고는 2020. 1. 9.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3)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2179호)을 받았다. 이에 따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11호증, 을 제1~3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들은 G의 대표자 I의 가족이거나 지인들로서, G에 근로를 제공한 바 없어 아무런 임금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. 한편 원고는 제1, 2판결 원금은 이 사건 배당절차 등에서 배당 또는 변제받았으나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지 못했고 그 금액은 합계 32,467,808원에 이른다.

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합계 22,933,863원(= 피고 B 7,693,418원 + 피고 C 5,733,466원 + 피고 D 5,733,466원 + 피고 E 3,773,513원)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, 피고들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(주위적 청구원인).

피고들이 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면, 피고들은 원고에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(예비적 청구원인).

3. 판단

○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 다만 배당요구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,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.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,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10263 판결,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).

○ 원고는 제2판결의 원금에 해당하는 85,000,000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,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위 임금 85,000,000원이 체납되었다는 취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또는 제1판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. 4) 나아가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(대법원 2000. 2. 12.자 99마5143 결정 참조).

결국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제2판결 원금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,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

하더라도, 피고들이 배당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위 배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.

○ 원고가 제1, 2판결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강화석

【별지】

양도할 출급청구권의 표시

피고 성명		배당금액
		7,693,410원
		5,733,466원
		5,733,466원
		3,773,513원

- 1) '7,693,418원'의 오기로 보인다.
- 2) 1순위(최종 3개월분 최우선임금채권) 배당액 15,000,000원에 2순위(우선임금채권) 배당액 60,269,898원을 더한 금액이다. 피고들의 배당액도 이와 같다.
- 3) 제1, 2판결에 따른 G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'G가 피고들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해주고 무변론판결을 받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'고 주장하였다.
- 4) 원고는 위 배당이의 사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'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금 85,000,000원만 청구했고, 이자는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지 않았다'고 진술하였다.